COVID-19 및 유급 병가

COVID-19에 감염되었거나 COVID-19 환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병가(휴가)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법 및 지역 법률은 근로자가 자신이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. 예를 들어 근로자는 자가 격리* 또는 격리를 위해 아니면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에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. 고용주는 병가를 요청하거나 내는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. 이 안내 자료에는 모든 법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.

참고: 연방 법률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기는 하지만 근로자는 2020년의 병가에 대해 연방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* 자가 격리란 COVID-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0일 동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.

주

뉴욕주 응급 COVID-19 유급 병가 법률

보장을 받는 사람	보장되는 사항	보장 기간
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모든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 근로자. 자가 격리 명령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855-491-2667번으로 연락해야 합니다.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례(Federal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, FFCRA) (연방 섹션 참조) 하에서 연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혜택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, 주법이 FFCRA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주 혜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가 개인 여행을 목적으로 뉴욕주 여행 경보가 적용되는 지역을 다녀온 경우 *혜택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.*	**유급 병가**는 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. 예를 들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. ▪ COVID-19 증상이 있음, 또는 ▪ COVID-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함	고용주의 규모 및/또는 수입에 따라 근로자는 *5 내지 14일의* ***유급 휴가***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: 근로자는 *자가 격리 중* ***유급이 아닌 기간*** 동안 유급 가족 간호 휴가 또는 장애 혜택을 쓸 수 있습니다. 주법에 따라 유급 병가는 시 법률에 따른 병가에 **추가로** 사용이 가능합니다.

? 뉴욕주 노동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)에 연락하는 방법:
전화 **844-337-6303** | 웹사이트 **paidfamilyleave.ny.gov/covid19**

COVID-19 백신 접종을 위한 뉴욕주 유급 휴가

이 법은 2021년 3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효됩니다.

보장을 받는 사람	보장되는 사항	보장 기간
고용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**뉴욕주의 모든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 근로자들**	**유급 병가**는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. 백신 접종을 받는 근로자로서: ▪ 1회만을 맞는 COVID-19 백신을 1회 접종 받을 때 또는 ▪ 2회 접종이 필요한 COVID-19 백신을 2회 접종 받을 때	근로자는 백신 접종 회당 최대 4시간, 총 8시간까지 휴가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참고: COVID-19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는 주정부 또는 시정부 유급병가법에 따라 누적 휴가에 **추가로** 생기는 것입니다. 근로자는 COVID-19 백신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누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? 뉴욕주 노동부(New York State Department of Labor)에 연락하는 방법: 전화: **888-469-7365** | 웹: **dol.ny.gov**
방문 후 "paid leave for COVID vaccine" (COVID 백신 유급 휴가) 검색

지역 및 연방 법률 >>

지역

뉴욕시 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 법률

보장을 받는 사람	보장되는 사항	보장 기간
뉴욕시의 모든 **재택 근무자**(집에서 근무) 및 **모든 규모의 사업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**(정규직, 시간제, 임지 근로자 모두 포함).	**병가는**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. ▪ 몸이 아플 경우 ▪ 예방 진료가 필요한 경우 ▪ 자가 격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▪ 질병, 부상 또는 질환으로 인해 진단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▪ 상기 이유에 해당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병가는 고용주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모든 재택 근무 및 비재택 근무 근로자에게 **보장됩니다**. 고용주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고 순수익이 1백만 달러 미만일 경우 비재택 근로자의 병가는 **무급**으로 이루어집니다.	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 ▪ **(근로자 100명 이상)** 근로자는 *최대 56시간*의 병가를 매년 낼 수 있습니다. ▪ **(근로자 1-99명)** 근로자는 *최대 40시간*의 병가를 매년 낼 수 있습니다. 참고: 모든 근로자는 30시간의 근무 시간마다 1시간의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.

?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(NYC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)에 연락하는 방법:
전화로 **311**에 연락하여 "Paid Safe and Sick Leave"(유급 안전 휴가 및 병가)라고 말하십시오 | 웹사이트 **nyc.gov/workers** | 이메일 **OLPS@dca.nyc.gov**
고용주는 오직 채팅으로만 연락 가능합니다 - **nyc.gov/BusinessToolbox.**

연방

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조례(FFCRA) COVID-19 유급 병가

연방법*이 2020년 4월 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효됩니다.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의 병가에 대해 연방 혜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*

보장을 받는 사람	보장되는 사항	보장 기간
고용주가 500인 이하의 사업장인 경우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의 근로자(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모두 포함).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에 *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* ▪ 의료 종사자 또는 일차 대응 요원인 경우, 또는 ▪ 고용주가 50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재정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.	**유급 병가**는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. ▪ 본인이 자가 격리 명령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명령을 받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▪ 의사의 권고로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 ▪ COVID-19 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▪ COVID-19과 관련된 질환의 진단을 받은 경우, 또는 ▪ COVID-19로 인해 학교 또는 보육 시설이 문을 닫은 자녀가 있는 경우	직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 ▪ **정규직 근로자**는 *최대 80시간*을 쓸 수 있습니다. ▪ **시간제 근로자**는 2주 기간 동안 일한 평균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. 참고: 근로자는 가족 및 의료 병가법(Family and Medical Leave Act, FMLA)에 따라 추가의 유급 병가 또는 무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? 미노동부(U.S. Department of Labor)에 연락하는 방법:
전화 **866-487-9243** | 웹사이트 **dol.gov/agencies/whd/pandemic**

NYC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| Test & Trace Corps

NYC Test & Trace Corps는 COVID-19 확진자 본인과 관련 밀접 접촉자가 무료로 호텔에서 또는 집에서 안전하게 자가 격리를 실시할 때 필요한 리소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안전한 자가 격리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**1-212-COVID19**(212-268-4319)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.